

국 민 안 전 처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강원도 ○○○○사업소 ○○지소에서는 2015. 7. 3. 강원도 ○○시 ○○로 00 0층에 소재한 ○○○○(주)과 도급계약(도급액 1,161백만원)을 체결하여 “○○○지구 정비사업”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 1. 19.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6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앵커 시공용 크레인 규격을 사면 높이와 작업 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100Ton → 100, 50Ton) 내역에 반영함으로써 43,235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다.

[표] ○○○지구 크레인 과다 설계 현황

(단위 : 천원)

공 종	설계 반영 (100t 크레인)		변경				감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50t)	금액	수량 (100t)	금액	수량	금액	
계		385,659		214,445		127,979		43,235	
영구앵커	46공	34,377	22공	11,838	24공	20,765		1,774	
네일	5,884m	298,189	4,066m	170,877	1,818m	92,133		35,179	
수평	1,040m	52,705	755m	31,730	285m	14,443		6,532	
중기 운반비	1식	388			1식	638		-250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지구 정비사업에서 과다 계상된 43,235천원을 감액조치 하시고, 사업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